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18호

「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강릉시민이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릉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~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gimyoun17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이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강릉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

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,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환경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
2.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·협력 방안
3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
4. 습지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
5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
6.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7.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
8.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
9.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
10.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강원특별

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
2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
4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5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6.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
7.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·지원
8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2.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 환경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5.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자문
6.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.

2.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가.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나.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

다.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해외출장, 질병,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13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, 보급 및 지원
2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
3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
4.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
5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
6.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
7.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환경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사업의 일부를 환경교육센터,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